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정재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번호 | 2315 |
|------|------|

발의일자 : 2023. 3. 10.

발 의 자 : 정재동, 고영찬 의원(2명)

1. 제안이유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청년 창업 지원(안 제5조)
- 다.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9조)
- 라. 창업지원센터 입주(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제10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3. 3. 11. ~ 3.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을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청년 창업자”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청년 창업 공간 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투자 유치 지원
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5.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전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기술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9. 20.] [대통령령 제32914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